

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여는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화학사고, 정보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의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기후위기적응법이 제정되고 10월의 첫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되는 등 ESG 관련 법률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10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Contents

- 01 ESG Keyword 【화학사고 · 정보보호 · 의무공개매수】
- 02 ESG Trend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3 ESG Policy 【2026년 10월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 04 ESG Event 【한국 WWF 「저탄소철강 전환」 세미나】

Environmental Issue : 화학사고

ESG Keyword

이용우 의원, 대기업 화학법 위반 89건...반복되는 화학사고, 예방체계 도마 (환경포커스, '26.09.11.)

<https://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73792>

주요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최근 3년여 동안 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SK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16건, LG그룹 15건, 한화그룹 10건, 롯데그룹 9건 순이었다. 사상자 발생 관련 위반 14건 가운데 SK 계열사 위반이 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화학사고 즉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13건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화학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고 후 적발·처분하는 사후 대응을 반복할 게 아니라 반복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체계가 작동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산산단 화학사고, 육상서 해상까지 민관 공동대응 (환경일보, '26.09.15.)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439>

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5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대산산단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6개 행정기관과 46개 사업장이 참여한 2개 민간 협의체가 함께했다. 대산산단은 석유화학 전용부두가 해안선을 따라 밀집해 육상 화학사고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협약기관들은 사고 발생 시 취약시간대에도 선박과 인력, 방제장비를 신속히 동원하고 상황을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대산항 돌핀부두에서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위험유해물질(HNS) 유출사고를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화학사고 5년간 12건...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11건 (머니투데이, '26.09.22.)

<https://www.mt.co.kr/economy/2026/09/22/2026092114494992356>

반도체 사업장 화학사고 대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화학사고 12건 중 11건이 SK하이닉스(6건)와 삼성전자(5건)에서 발생했고, 9건에서 10명이 다쳤다. 올해 6월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에서는 불소 가스가 11일 간격으로 두 차례 유출됐으나 행정처분은 없었다. 반도체 54개 사업장 중 47곳이 5년간 시정조치 296건을 받았지만, 현장 이행점검으로 적발된 비중은 2022년 20%에서 2025년과 올해 0%로 떨어져 정부가 서류 심사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SG Keyword

현대차 협력사도 해킹... 韓 기업 공급망 위협 공포 확산 (보안뉴스, '26.09.12.)

<https://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781>

현대차 주요 부품 협력사 A사가 최근 사이버 공격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마쳤다. 공격자는 이 회사의 제조·파트너·직원·고객 정보라며 다크웹에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했고, 11일 현재까지 게시된 상태다. A사는 현대차가 먼저 공격을 감지해 알려줬고 공격 루트는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에는 SK하이닉스·롯데케미칼 협력사인 에어리퀴드코리아의 랜섬웨어 피해도 드러났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협력사와 수탁사, 해외법인이 공급망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가운데, AI를 악용한 자동화 공격으로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6. 9.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시행 (법률신문, '26.09.17.)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9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 전 지정한 CPO도 6개월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법은 유출 등의 범위에 위조·변조·훼손을 포함하고,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에 예산·인력·설비를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 있던 ISMS-P 인증 의무 대상 범위는 추가 규제심사 필요성 등으로 최종 시행령에서 제외됐다.

구분	주요 내용	세부 기준 및 유의사항
과징금 감경 기준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하고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과징금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	투자 규모·비율·지속성, 대표자 책임 이행, CPO 역할·조직 구성,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 노력 등 고려. 위반 내용·피해 규모에 따른 추가 감경(최대 50%)
CPO 신고 구체화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개인정보위에 신고	시행 전 지정된 CPO는 이사회 의결 없이 6개월 내 신고,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유출 등 범위 구체화	분실·도난·유출에 더해 위조·변조·훼손(랜섬웨어 등)도 유출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	유출 통지 항목에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방법 추가
유출 가능성 통지	유출 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72시간 내 실제 유출이 확인되면 유출 통지로 같음, 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통지
ISMS-P 인증 의무자	개정 시행령에서는 인증 의무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관련 규정 제외	이에 관한 개정법 시행일은 2027.7.1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될 예정

[자료] '26.09.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참고 재구성

3954만 톨린 티빙(TVING), 키 관리 부실이 부른 '디지털 참사' (보안뉴스, '26.09.18.)

<https://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티빙(TVING) 침해사고가 내부 개발자 접속키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 공격자는 개발환경 접속키로 침투한 뒤 소스코드에 암호화 없이 하드코딩된 운영환경 접속키를 확보해 이용자 DB까지 도달했고, 개발 프로젝트 361건과 계정 정보 3954만개가 유출됐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이 유출됐고, 일부는 암호화 키까지 빠져나가 사실상 평문 상태*였다. 조사단은 개발 인력 149명에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4명 내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실상 평문 상태: 암호화되어 있지만 암호키 해제 수단이나 권한이 함께 노출되어 사실상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문자(평문)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상태

ESG Keyword

의무공개매수 초읽기...PEF 상장사 인수 셈법 바뀌나 (이데일리, '26.09.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4776664557848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사모펀드의 상장사 인수 셈법도 달라지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만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던 방식에서 잔여주주 응모분까지 과반을 채우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내 출자자가 개별 투자건을 펀드 총출자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인수 대상 시가총액의 다섯 배가 넘는 펀드를 운용하는 곳만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개매수 대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는 부담도 더해진다. 구주 인수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소수지분을 확보한 뒤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전략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 의무공개매수제도: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기업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M&A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새로운 지배주주(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투자회수 기회’의 보장)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금융위, 2022)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이투데이, '26.09.17.)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6751>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기존 25% 이상 최대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인수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 보유분을 뺀 물량 이상을 일반주주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배주주만 누리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해 주주평등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용사들 "의무공개매수제 50%+1주는 수용...대주주 선행매수는 빼야"" (뉴스핌, '26.09.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984>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보류 및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50%+1주' 부분매수 방식은 수용하되,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 구조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가 40%를 보유한 기업의 일반주주는 보유지분의 약 1/6만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대안으로 지배주주도 공개매수에 함께 참여해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매각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시하며, 총매수자금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됨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우려점			
주요 내용	적용 요건	본인·특수관계인 합산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 보유 최대주주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CB·BW 권리행사 포함)	
	매수 물량·가격	발행주식 총수의 50% + 1주에서 기보유분을 뺀 수량 이상을 공개매수.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응모 주식이 목표 물량 초과 시 안분, 미달 시 응모분 전부 매수	
	적용 제외·제재	50% 이상 보유자의 추가 매수, 부실징후·회생절차 기업 인수는 제외. 위반 시 의결권 제한, 금융위원회 처분 명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	
기대효과 및 우려점	구분	기대효과	우려점
	일반주주	최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매각 기회	50%+1주 한도로 일부만 매각 가능, 지배주주 과반 보유 기업은 보호 공백
	인수자·M&A 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	추가 매수에 따른 인수자금 부담 증가, 대형 PEF 쏠림·매물 감소
	지배구조	주주평등 실현, 소수지분 기반 행동주의 확대전망	지분을 50%+1주에 맞춘 지배력 집중, 법 준수가 면책 방패막이 될 우려

[자료] '26.09.17 이투데이,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26.09.17 한국경제, "경영권 살 때 의무공개매수 '50%+1주'" 참고 재구성

ESG Trend

이번 호에서는 최근 제·개정된 ESG 관련 법률로, 제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2026.09.22. 제정, 2027.09.23. 시행)」과 개정(2026.10.01. 국회본회의 의결, 공포 예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소개함

I.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2026.09.22. 제정, 2027.09.23. 시행)」

1. 제정 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위기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중심이던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적응(Adaptation)'을 별도 법률로 분리·구체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축을 기후재난에 맞서는 적응과 회복력(Resilience)으로 확장하고 독자적 법적 기반을 확립
- 기후변화의 영향 조사·예측·평가 수단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 제고 및 취약성 감소, 기후회복력 및 국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의의

-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회복력 등 기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핵심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해, 정책·연구·공시 전반에서 통일된 용어 기반을 마련
- 적응정보관리체계와 통합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기후 데이터를 통합·공개하고, 분야별·지역별 영향과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후위험평가 결과를 국가·지방·공공기관 적응대책뿐 아니라 국가기본계획, 국토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사·평가의 결과가 실제 정책·인프라 설계에 연계되는 구조 설계
- 국가·지방·공공기관 적응대책의 5년 단위 수립과 매년 이행점검을 제도화하고, 2년 단위 적응지표 점검·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환류 체계 구축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원사업, 기후보험 활성화 근거를 신설해, 기후재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의 법적 기반 마련
- 적응산업 육성과 기업의 기후위험 평가도구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두어, 기후적응을 산업·기술 성장의 영역으로 편입시켰음

3. 기업 및 기관의 대응

- 자사 사업장·자산의 물리적 기후위험 노출도(침수·폭염·산사태 등) 파악 및 공시·경영전략에 반영, 대응 로드맵 수립
- 정부의 적응정보통합플랫폼·공간정보 공개 시 이를 활용해 지역별 리스크 진단 체계 구축
- 정부 지원 기후위험 평가도구 마련에 맞춰 TCFD·ISSB 공시체계에 물리적 리스크 평가 결과 통합 준비
- 이사회·ESG위원회 차원의 기후적응 감독체계(보고라인, 투자계획) 마련으로 스튜어드십 대응력 확보
- 취약기관 해당 여부(공공기관 및 공공인프라 운영 법인 등) 사전 점검 및 공공기관 적응대책 대응 준비 등

ESG Trend

[표 1] 기후적응법 주요 내용

구분	입법 취지·주요 내용		기후적응법 조문
개념 정의	법률상 주요 핵심 개념 정의(신설 및 관련 타법률 준용)		제2조
	기후변화	- 사람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 변화(「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1호)	
	기후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의)	
	기후위기 취약성	-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	
	기후위험	-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	
	기후영향	- 기후변화가 분야별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 하거나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정의)	
	기후회복력	-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 기후변화가 분야별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기후위기 취약계층	-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정의)	
이상기후	-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정의)		
국가 책무	- (국가) 기후영향 지속 조사·분석, 기후위험 장기 전망 예측 및 해당 결과를 법령·국가계획·사회기반시설 설계에 반영,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의무 - (지자체)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 수립·이행 의무		제4조

ESG Trend

[표 1] 기후적응법 주요 내용(계속)

구분	입법 취지·주요 내용	기후적응법 조문
적응정보 관리	- (정부)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적응정보 수집·분석·생산·관리 교육,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방법론 개발, 기후위험 평가 및 방법론 개발 등) - (기후부)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생산·관리·활용 및 국민에 공개	제7조~ 제9조
기후영향· 기후위험 평가	- (정부)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해 주기적 조사·분석 의무 - (정부) 위 결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기후위험 주기적 평가 의무 - (기후부) 위 결과를 종합하여 5년마다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 작성·공개해야 함	제10조~ 제11조
공간정보 구축	- (기후부) 적응정보 수집·관리,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시각화 가능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취약기관/관계기관) 위 공간정보 활용하여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의무	제12조
지방 이행체계	- (지자체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의무, 추진상황 매년 점검 및 결과 보고서 기후부에 제출 의무 - (기후부) 시·도별 기후위기 적응 지방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제16조~ 제17조
취약기관	-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 작성 의무 - (취약기관장) 위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할 지자체장에 제출 의무	제18조
성과·평가	- (정부)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취약성 감소, 적응역량 제고, 기후회복력 강화 위해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보급 의무 - 2년 단위 적응성과 점검·평가·결과 공개 가능	제19조
취약계층 실태조사	- (기후부/지자체) 기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영향 및 취약성 실태조사 의무 -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 시행 가능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 자연환경 변화 등 포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제21조~ 제22조
기후보험	- (정부/지자체)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할 의무 - (정부) 기후재난 발생 시 손해액 산정·지급절차 등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부/지자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23조
재원	- 기후대응기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제32조

ESG Trend

II.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1. 의결)

1. 개요 및 의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됨
-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됨

2. 주요 내용

- 개정안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 범위 확대, 사고 다발 사업장 과징금 신설 등이 포함되며, 시행일은 항목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공포 1년 후까지로 상이함
-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3. 기업의 대응

- **(리스크 관리)** 과징금 부과, 등록 말소 등 경영 관련 중요 리스크에 대비해 고위험 사업장 중심 밀착 예방 체계 가동
- **(작업중지권 대응 프로세스 개편)** 하청의 원청 대상 직접 요구 및 위험 '우려' 시 작업중지권 신설에 대응하여 현장 즉각 조치 매뉴얼 정비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 수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도급 계약 수정 검토)** 발주자 외 도급인 및 타 업종으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 확보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선제 개정
- **(기후재난 공기 연장 프로토콜 구축)** 폭염·한파가 공기 연장 사유로 명시됨에 따라 기상특보별 작업 단축·중단 기준 및 공기·간접비 협의 절차 표준화
- **(내부 신고 채널 및 안전 거버넌스 강화)** 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설에 대응해 사내 익명 안전 핫라인 활성화, 안전 점검체계 강화

[표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 - (구성)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 위원은 노사 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	공포 3개월 후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업중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노동자) 노동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u>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u>,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요구 가능.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중지 명령 요건 확대. 중대재해 발생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 가능 - (사업주)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 신설.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 재개 불가	공포 6개월 후

ESG Trend

[표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계속)

구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시행일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 요청 가능	공포 6개월 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 (현행)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 (개정)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확히 규정	공포한 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현행)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 - (개정) 계상 의무를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 도급인(원청)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설 공포 6개월 후 건설 外 공포 1년 후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 -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 - (기대효과)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	공포 6개월 후
신고포상금 도입	- 법 준수에 대한 현장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정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	공포 3개월 후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 (현행)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인증 면제 가능 - (개정)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증 면제 대상 확대 - (기대효과) 안전인증을 위한 기업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품 기간 단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포한 날

주 : 시행일은 개정 법률 공포일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10.01), 대신경제연구소 재구성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10월호에서는 10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중소 중견 대 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시행 공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지역소멸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등이 농어촌에서 실천한 상생협력·사회공헌 등 농어촌 ESG활동을 적극 발굴 및 참여 독려	(인정대상) 인정 대상기간('25.1.1~'25.12.31)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의 농어촌ESG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 (추진절차) 신청·접수→ 1차 심사→ 자료 보완→ 2차 심사→ 평판 조사→ 심의위 심의→ 운영위 의결→ 인정서 수여 (심사방법)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총 3개 영역 30개 지표 중 신청 민간기업 등이 심사 지표를 선택하여 제출, 심사 지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점수 산출 (인정기준) 심사 결과 종합 점수 110점 중 80점 이상인 민간기업 등에 대해 인정	10월 12일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농어촌기금 운영부 02-368-8957, nongfund@win-win.or.kr
중소 중견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 공고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정기업의 실증부터 법령정비까지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실증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규제특례 승인기업 중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 및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지원기준) 사업비의 최대 70%(최대 1.2억원), 협약 체결로부터 1년간 지원 - 중소 비영리: 정부지원금 기준 총사업비의 70% 이하, 민간부담금 기준 총사업비의 3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기준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기준 총사업비의 50% 이상 (추진절차) 신청접수 ->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 실증사업비 지원	10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791, 1792, 1790 / sandbox@keiti.re.kr
중소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기업 공급망과 중소기업에 환경성적 산정 비용을 지원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확산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뒷받침	(지원대상)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및 가점 합산한 총점이 높은 제품 순 - 항목: 저탄소제품, LCD DB 개발 참여, 작성지침 개발 참여, 전년도 매출액, 중복지원 여부 (지원규모) 총 362백만원 내외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10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02-2284-1590, dyu923@keiti.re.kr

한국 WWF 「저탄소철강 전환 세미나」 개최 ('26.10.14)



한국 WWF 저탄소철강 전환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저탄소철강을 위한 협력에서 답을 찾다

26.10.14 ————— 10:00-11:30

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10:00-11:3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 살롱 (서울 중구 명동11길 14)

주최 한국WWF

내용 한국 철강산업의 저탄소전환 현황 진단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기반 협력의 필요성

10:00~10:05	인사말	WWF
10:05~10:35	한국 저탄소철강 전환 현황과 과제	대신경제연구소 오현주 ESG리서치센터장
10:35~10:55	해외 사례로 보는 저탄소철강 시장 형성 전략: 호주 MECLA 사례를 중심으로	MECLA Hudson Worsley 의장
10:55~11:15	선언에서 행동으로: 한국형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	WWF 정현민 팀장
11:15~11:25	질의 응답	대신경제연구소 오현주 센터장, WWF 정현민 팀장
11:25~11:30	마무리	WWF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은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해양·기후·에너지·산림·담수·야생동물·식량 등 자연보전 전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WWF는 2014년 공식 설립되어 국내에서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연구·정책 제언·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생산 방식의 전환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공급망 전반의 탄소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WWF는 전 산업 부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 저탄소철강 전환을 위해서는 철강기업뿐만 아니라 수요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WWF는 **국내 저탄소철강 전환 현황과 해외 사례, 핵심 과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한국형 협력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